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79,042,465	110,371,274
일반회계	3,181,746,564	95,452,397
특별회계	497,295,901	14,918,877
공기업특별회계	395,286,267	11,858,5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0,229,251	5,706,87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5,057,016	6,151,710
기타특별회계	102,009,634	3,060,289
교통사업 특별회계	29,587,329	887,62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7,732	50,93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482,800	104,484
대지보상 특별회계	254,385	7,632
수질개선 특별회계	32,200,750	966,02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78,782	98,36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45,339	37,360
균형발전특별회계	21,180,206	635,406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9,082,311	272,46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073,23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으며, 간주처리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